

## 학생종합복지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 복지를 관리하는 기구로 학생종합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되고, 각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장학생 선발·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학금에 관한 주요 사항
6. 학술·예술·어학·취미·봉사·이념·종교·체육활동 등의 학생활동 지도·육성에 관한 사항
7.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업무관장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입학지원팀장이 된다.<개정 2021.1.21.><개정 2021.7.22.>

**제9조(재정)**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2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1. 1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